

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 펀드명: 트러스톤핀셋중소형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 사항:

- (1) 부책임운영역 추가
- (2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 예정일: 2018년 10월 23일(화)

□ 변경 내용:

- (1) 부책임운영역 추가: 차지호 부장
- (2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<b>공제제도:</b>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(좌동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  분리과세한도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	<b>- (신설)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 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 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)</b>  분리과세한도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<b>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 과세 적용</b> <b>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</b> <b>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 하는 연금소득</b>

트러스톤자산운용(주)



트러스톤자산운용